

소상공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심사보고서

2025. 11.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1. 심사경과

가. 발의일자 및 발의자: 2025. 4. 7. 오세희의원 등 13인

나. 회부일자: 2025. 4. 8.

다. 상정 및 의결일자:

제429회 국회(정기회)

제1차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2025. 9. 8.) 상정 · 제안설명
· 검토보고 · 대체토론 · 소위원회

제1차 중소벤처기업소위원회(2025. 9. 11.) 상정

제2차 중소벤처기업소위원회(2025. 9. 22.) 상정 · 축조심사 · 의결(대안
반영폐기)

제2차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2025. 9. 25.) 상정 · 소위심사
보고 · 찬반토론 · 의결(대안반영폐기)

2. 제안설명의 요지

(제안설명자: 오세희의원)

현행법에 따르면 정부는 소상공인의 보호 · 육성을 지원하기 위하여 3

년마다 소상공인 지원 기본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함.

그런데 소상공인을 보호의 대상으로 보기보다는 소상공인이 자주적인 노력을 통해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 정책의 방향을 개편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됨. 또한, 기업의 지속가능한 성장에 있어 인공지능 활용과 에너지 전환이 필수적인 요소로 꼽히고 있어, 이에 대한 지원 시책도 마련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있음.

아울러 소상공인에 대한 종합적인 육성 및 지원 계획을 마련하여 경제 주체의 한 축인 소상공인에 대한 맞춤형 정책 마련을 통해 정부의 소상공인 지원이 한시적 또는 시혜성 지원 중심의 틀에서 벗어나야 한다는 의견도 있음.

이에 소상공인의 보호에 초점을 둔 현행법상 기본계획을 소상공인의 창의적·자주적 성장을 위한 소상공인 육성에 관한 종합계획으로 개편하고, 소상공인의 경영 합리화와 기술 향상, 구조 고도화, 디지털화 및 에너지 효율화 촉진에 관한 사항 등을 포함하도록 함으로써 소상공인의 경쟁력 강화와 국민경제의 균형 있는 발전에 이바지하려는 것임(안 제7조 등).

3. 전문위원 검토보고의 요지

(전문위원: 성소미)

개정안은 정부가 소상공인의 보호·육성을 지원하기 위하여 3년마다 수립·시행하도록 규정되어 있는 ‘소상공인 지원 기본계획’을 창의적이고 자주적인 소상공인의 성장을 지원하기 위하여 수립·시행하여야 하는 ‘소상공인 육성에 관한 종합계획’으로 변경하고, ‘소상공인 육성 정책의 기본목표와 추진 방향’ 등 동 종합계획에 포함되어야 하는 사항들을 규정하고 있음.

개정안의 입법취지대로 법 개정이 이루어지고, 정부의 ‘소상공인 육성에 관한 종합계획’ 수립·시행이 실질적인 정책 추진으로 이어진다면 소상공인의 경쟁력 및 자생력 강화를 지원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다만, 현행법이 정부로 하여금 3년마다 ‘소상공인 지원 기본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데 비해 개정안은 ‘소상공인 육성에 관한 종합계획’의 수립·시행 주기에 관해서는 규정하고 있지 않은데,

안 제8조제1항과 제2항에서는 정부와 시·도지사가 동 종합계획에 따라 매년 각각 ‘소상공인 육성 시행계획’과 ‘관할 지역의 특성을 고려한 소상공인 육성 시행계획’을 수립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소상공인 육성에 관한 종합계획’의 수립·시행 주기를 규정할 필요가 있어 보임.

4. 대체토론의 요지

없음.

5. 소위원회 심사내용

(소위원장 : 김원이 위원)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하되, 권칠승의원·오세희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2건의 「소상공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통합·조정한 안을 우리 위원회 대안으로 제안하기로 하였음.

대안의 주요내용은 현행 ‘소상공인 지원 기본계획’을 ‘소상공인 보호와 육성에 관한 종합계획’으로 변경하고, 소상공인의 인공지능 기술 활용 및 디지털화 촉진, 사업장의 에너지 효율화 촉진, 지식재산권 취득 지원 및 보호에 관한 사항 등을 포함하여 종합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하는 것임.

6. 심사결과

개정안의 취지를 위원회 대안에 반영하고, 개정안은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함(대안반영폐기).